

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2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1 우수무역전시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
-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22년 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로서, 가장 최근 개최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을 획득한 전시회(최초개최전시회 신청 불가)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비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전시회는 9p '2 지역특화전시회' 참조

□ 지원유형

지원유형	내 용
① 글로벌톱전시회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전시회
② 유망전시회	글로벌톱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수도권 전시회
③ 신규무역전시회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수도권 초보 전시회
④ 전략전시회*	미래시장 선점과 혁신성장이 가능한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 관련 수도권 전시회
⑤ 글로벌브랜드전시회	전시사업진흥회 인증 또는 국제인증 받은 국내전시회로서, 해외 개최가 예정된 수도권 기반의 동일브랜드 전시회

* 전략전시회의 경우, '20년 기선정된 3건 전시회 외에 금년도 전시회 추가 선정 예정(단년도 지원 계획)

□ 신청자격

-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국내주최사업자 신청 가능(해외주최사업자는 단독 사업신청 불가)

□ 신청요건

- '21년 인증데이터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항력적인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9년과 '20년 인증데이터도 제출 가능('19~'21년 인증데이터 중 선택 가능)

* 전시면적 2천㎡미만 신청 불가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 장소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해외 참가업체	참관객	기타 요건
① 글로벌톱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단, 업종 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2만㎡ 이상	400개사 이상	100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1,000명 이상	○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 인증데이터 기준
② 유망		5천㎡ 이상	80개사 이상	8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80명 이상	○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 1회 이상 개최실적 -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③ 신규무역		2천㎡ 이상	50개사 이상	-	해외 바이어 10명 이상	○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 1회 이상 개최실적 - 인증데이터 기준 - 해외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요건은 1:10의 비율로 상호 대체 가능 - 과거 유망전시회로 지원받은 실적 있는 경우 신규무역전시회 신청 불가
④ 전략		6천㎡ 이상	120개사 이상	-	해외 바이어 80명 이상	○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주된 전시품목이 신산업분야 전시회 - 인증데이터 기준, 금년 최초로 개최하는 전시회의 경우 계획 기준 ○ 해당 산업군 국제컨퍼런스와 동시개최(2일 이상 개최, 기업 및 협단체 임원급 인사 연사로 초청) * 졸업전시회도 신청 가능 ('20년 기선정 전시회는 요건 무관)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 장소	총 전시 면적	총 참가 업체	해외 참가 업체	참관객	기타 요건
⑤ 글로벌 브랜드	해외 전시시설에서 개최	3천㎡ 이상	60개사 이상	-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동일 브랜드 전시회가 전시산업진흥회 ‘국제 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 국내전시주최기관이 해외전시장 운영자로부터 직접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데이터 기준. 인증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자료(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디렉토리, 참관객목록, 업체 부스사진 등) 필수 제출 - 최초 해외개최 전시회일 경우 계획 기준 <p>*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 인정</p>

* '20~'21년 최초 인증전시회는 각 인증년도 인증데이터 기준으로 신청(단, '20~'21년 최초 인증전시회의 경우 해외참가업체수·해외바이어수 신청요건 미적용)

** 상기 요건을 동시충족하는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유형간 중복신청은 불가함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시회의 경우 신청기관의 신청서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인증데이터 실적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평가함)

*** 비대면으로 참가한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도 증빙자료 검토 후 인정

□ 지원내용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전시회 지원유형	건당 지원수준*	지원금 사용항목 및 민간매칭 의무
① 글로벌톱	100백만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마케팅비에 최소 60% 이상 사용 ▪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40%까지 사용 가능 ▪ 신규무역전시회에 한해,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최대 30%까지 사용 가능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② 유망	70백만원 내외	
③ 신규무역	45백만원 내외	
④ 전략	45~10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가능 ▪ 해외연사를 포함한 해외참관객 및 해외업체 유치비로 사용 가능 ▪ 국내외 홍보비, 해외업체 유치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사용 가능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8:2(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⑤ 글로벌브랜드	80백만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최소 50% 이상 사용 ▪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 가능 ▪ 국내외 홍보비로 최대 30%까지 사용 가능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 전년도 지원 기준임. 지원금액은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선정건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략전시회는 단년도 지원 계획('20년 기선정 전시회의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 8]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공지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 지원금 교부

-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 유치목표 달성여부 및 인증자료 제출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졸업제 운영

- (추진배경) 전시회 성장단계를 3단계로 구분, 동일전시회의 단계별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의 지원 배제
- * '17년부터 도입·운영. 단, 전략·글로벌브랜드전시회는 해당없음
- (적용대상) '12년 이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시회
- * 홀수 격년 개최전시회의 경우, '13년 이후 국고지원 전시회부터 적용
- * 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위 단계로 성장한 전시회는 계속 지원가능하나 역성장 전시회는 지원 불가
- (최대지원횟수) 신규무역(2회), 유망(5회), 글로벌톱(3회)
- (한시적 유예)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정상개최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졸업제를 한시적으로 유예(지원횟수 미차감)

□ 졸업제 예외규정

- (추진배경) 전회차 인증데이터가 있고, 아래 적용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최대 3회)으로 졸업제 예외규정 적용하여 지원 전시회의 성장유도
- (적용범위) 졸업제 해당 전시회
- * 신청·평가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졸업 확정

- (적용방법)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유망전시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예외규정 적용전시회 부문 내에서 별도 경쟁심사 진행
- (적용유형)
 - (A유형: 대형화 전시회) 졸업제 대상 유망전시회가 품목이 유사한 1개 이상 전시회와 통합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대형화된 전시회
 - * 총전시면적 15,000㎡·참가업체 300개사·해외바이어 300명 이상
 - (B유형: 재참가율이 높은 전시회) 국내 참가업체의 전회대비 재참가율이 최근 3회 평균 40%이상인 전시회
 - (C유형: 바이어 유치실적이 높은 전시회) 해외바이어 유치실적이 최근 3회 평균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전시회
 - * 최근 3회 개최전시회, 평균 해외바이어수 기준 3개 구간별로 구분·적용 : 해외바이어수가 ① 500명 미만의 전시회의 경우 10% 이상 ② 1,000명 미만인 경우 5% 이상 ③ 1,000명 이상인 경우 3% 이상
 - (D유형: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전시회) 전시회 개최 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직·간접 활동 점수 합계가 20점 이상인 전시회

구 분		점수	비 고
일자리 직접창출	인턴 또는 정규직 채용 여부	5	6개월 이상 근무한(하는) 인턴 및 정규직 인원 1명 기준 점수
일자리 간접창출	전시회 시 취·창업 박람회 동시개최 여부	15	전시장 내 또는 전시장 외부공간에서 개최

* (점수 예시) 전시회 개최 시 취업박람회를 동시개최(15점)하고 전시회 인턴 1명 채용 시(5점) 총 20점(15점+5점)으로 예외규정 적용하여 지원 가능

< 주의사항 >

- 인턴 채용의 경우, 전시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채용확인서, 채용계획서 등) 제출해야 함.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이 된 후, 2022년 6월까지 채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정규직 채용 여부는 전시회 개최 전 1년 이내에 신청기관에서 정규직 인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제출
-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취·창업 박람회 개최 계획서 또는 개최가 명기된 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등 제출
-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이 된 후, 지원 시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022년 6월까지 채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창업 박람회 개최여부는 전시회 실시 시 확인되어야 함. 상기 사항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되며 동사업 차기 신청 제한

□ 국고보조금 반납

-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 전시면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전시면적 감소비율	감액율
(-5%)~0%	0%
(-10%)~(-5.1%)	5%
(-15%)~(-10.1%)	10%
(-20%)~(-15.1%)	15%
(-25%)~(-20.1%)	20%
(-30%)~(-25.1%)	25%
(-30.1%) 이상 감소	30%

-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해외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중 1개라도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전시회 유치목표* 미달 또는 인증자료 및 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율을 반영하여 반납. 단, 글로벌브랜드 전시회는 총참가업체수 대비 국내참가업체수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총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 ①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시회 : 목표 해외바이어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② 전략전시회 : 목표 해외바이어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③ 글로벌브랜드전시회 : 목표 총참관객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 유치목표 미달성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유치목표 달성 여부	감액율	인증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감액율
초과달성 및 (-5%)~0%	0%	1주 미만	0%
(-10%)~(-5.1%)	5%	2주 이상	5%
(-15%)~(-10.1%)	10%	3주 이상	10%
(-20%)~(-15.1%)	15%	4주 이상	15%
(-25%)~(-20.1%)	20%	5주 이상	20%
(-30%)~(-25.1%)	25%	합산 감액율 최소 0~최대 50%	
(-30.1%) 이상 미달	30%		

* 인증자료 제출일자는 전시회 종료 익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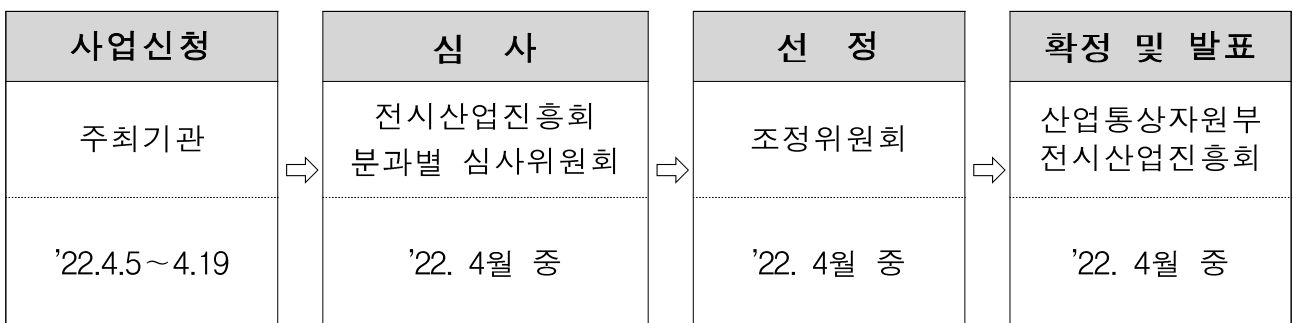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 업체 및 바이어 DB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전시회 종료 후 국고보조금 투입된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DB자료 미제출시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 신청 불가
- 비대면으로 참가한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도 증빙자료 검토 후 인정

□ 기타 유의사항

-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평가대상이 됨
- (가점) 일자리 창출효과(1점), 사회적 기업(1점), 전시산업 전문 자격증 소지(최대 1점)
 - * [붙임 7] 가점 항목 참조

3. 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 : 글로벌톱·전략·글로벌브랜드전시회는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 유망·신규무역전시회는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산업심사 : 전략전시회에 한하여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 성장성 등에 대해 산업·경제분야 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가가 평가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전시산업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발표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붙임 1] 참조

□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4월 5일(화)~4월 19일(화), 18:00
 - * 2022년 4월 19일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해서만 인정
-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 · 제출
-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권 혁 대리(T. 02-574-2021)

1.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전시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지방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발전
-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22년 비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일부 유형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전시회)
 -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제외한 지역
 - ** 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전시회는 1p '㉠ 우수무역전시회' 참조
 - *** 최초개최전시회 및 기존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에서 졸업한 전시회도 신청 가능

□ 지원유형

지원유형	내 용
① 지역글로벌톱전시회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전시회
② 지역유망전시회	지역글로벌톱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비수도권 전시회
③ 지역신규무역전시회	지역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비수도권 초보 전시회
④ 지역전략전시회*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시회
⑤ 지역글로벌브랜드전시회	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국내전시회로서, 해외 개최가 예정된 비수도권 기반의 동일브랜드 전시회

* 지역전략전시회는 비수도권 광역시도가 추천한 각 1건의 전시회 선정 예정

□ 신청자격

-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국내주최사업자 신청 가능(해외주최사업자는 단독 사업신청 불가)

□ 신청요건

- '22년 개최계획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전시회
 - * 일부 유형은 인증데이터 기준(인증데이터는 불가항력적인 코로나19 감안하여 '19~'21년 중 선택 가능). 전시면적 2천㎡미만 신청 불가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장소	전시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기타 요건
① 지역 글로벌톱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단 지역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1만㎡ 이상	200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100명 이상	○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자격에 부합하는 전시회 * 인증데이터 기준. 졸업전시회도 신청가능
② 지역 유망		4천㎡ ~ 1만㎡ 미만	100 ~ 200개사 미만	해외 바이어 50 ~ 100명 미만	○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1회 이상 개최실적 있을 것 * 계획 기준. 졸업전시회도 신청가능
③ 지역 신규무역		2천㎡ ~ 4천㎡ 미만	50 ~ 100개사 미만	해외 바이어 5 ~ 50명 미만	○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최초개최전시회도 신청가능 * 계획 기준
④ 지역 전략		6천㎡ 이상	120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80명 이상	○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 추천(1건)하는 전시회 - 지방비 지원 계획이 있는 전시회로,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전시회' 또는 전시회 경쟁력, 성장가능성, 지역전략 산업 연계 등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가능 - 지역전시회 개최여건(전시장, 전시면적 등)에 따라 신청요건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천 가능 * 인증데이터 기준이나 최초개최일 경우 계획 기준. 졸업전시회도 신청 가능

전시회 지원유형	개최장소	전시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기타 요건
⑤ 지역 글로벌 브랜드	해외 전시시설에서 개최	3천㎡ 이상	60개사 이상	총 참관객 3천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동일 브랜드전시회가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 ○ 국내전시주최기관이 해외전시장 운영자로부터 직접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데이터 기준. 인증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자료(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디렉토리, 참관객목록, 업체 부스사진 등) 필수 제출 - 최초 해외개최 전시회일 경우 계획 기준

* 상기 요건을 동시충족하는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유형간 중복신청은 불가함

** 비대면으로 참가한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도 증빙자료 검토 후 인정

□ 지원내용

-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비, 부스장치비, 방역장비 임차비 등 일부 지원

전시회 지원유형	최대 지원금액	지원금 사용항목 및 민간매칭 의무
① 지역글로벌톱	12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마케팅비에 최소 45% 이상 사용 ▪ 부스장치비에 최소 20% 이상 사용 ▪ 방역장비 임차비에 최대 5%까지 사용 ▪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30%까지 사용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② 지역유망	90 백만원	
③ 지역신규무역	60 백만원	
④ 지역전략	60~12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해외 마케팅비에 최소 45% 이상 사용 ▪ 부스장치비에 최소 20% 이상 사용 ▪ 방역장비 임차비에 최대 5%까지 사용 ▪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으로 최대 30%까지 사용
⑤ 지역글로벌브랜드	80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중소기업 유치비로 최소 50% 이상 사용 ▪ 전시장 임차비로 최대 20%까지 사용 ▪ 국내외 홍보비로 최대 30%까지 사용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 이상으로 매칭

*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선정건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 8]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공지
-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 지원금 교부

-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 유치목표 달성여부 및 인증자료 제출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반납

-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 전시면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률 >

전시면적 감소비율	감액률
(-5%)~0%	0%
(-10%)~(-5.1%)	5%
(-15%)~(-10.1%)	10%
(-20%)~(-15.1%)	15%
(-25%)~(-20.1%)	20%
(-30%)~(-25.1%)	25%
(-30.1%) 이상 감소	30%

-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중 1개 라도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전시회 유치목표* 미달 또는 인증자료 및 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률을 반영하여 반납. 단, 지역글로벌브랜드 전시회는 총참가업체수 대비 국내참가업체수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총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 ① 지역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시회 : 목표 해외바이어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 ② 지역전략전시회 : 목표 해외바이어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 ③ 지역글로벌브랜드전시회 : 목표 총참관객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 유치목표 미달성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률 >

유치목표 달성 여부	감액률	인증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감액률
초과달성 및 (-5%)~0%	0%	1주 미만	0%
(-10%)~(-5.1%)	5%	2주 이상	5%
(-15%)~(-10.1%)	10%	3주 이상	10%
(-20%)~(-15.1%)	15%	4주 이상	15%
(-25%)~(-20.1%)	20%	5주 이상	20%
(-30%)~(-25.1%)	25%	합산 감액율 최소 0~최대 50%	
(-30.1%) 이상 미달	30%		

* 인증자료 제출일자는 전시회 종료 익일 기준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DB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전시회 종료 후 국고보조금 투입된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DB자료 미제출시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비대면으로 참가한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도 증빙자료 검토 후 인정

□ 기타 유의사항

-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평가대상이 됨
- (가점) 일자리 창출효과(1점), 사회적 기업(1점), 전시회 인증(1점)

* [붙임 7] 가점 항목 참조

4. 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사업신청	심사	선정	확정 및 발표
주최기관	○ 전시산업진흥회 ○ 지역특화분과 심사위	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진흥회
'22.4.5~4.19	'22. 4월 중	'22. 4월 중	'22. 4월 중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 : 지역글로벌톱·지역글로벌브랜드전시회는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 지역유망·지역신규무역·지역전략전시회는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신청건수, 경쟁률 등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에서 권역별 선정건수 조정가능함

□ 신청서류

- 지역전략전시회는 비수도권 광역시도 전시산업 담당과를 통해 서류심사 종료 시까지 공문으로 추천받음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전시산업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발표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붙임 1] 참조

□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4월 5일(화)~4월 19일(화), 18:00
 - * 2022년 4월 19일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해서만 인정. 단, 지역전략전시회의 경우 별도의 공문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도에 안내하며 서류심사 종료일(4.21)까지 추천서 접수함
-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 · 제출
-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권 혁 대리(T. 02-574-2021)

[붙임] 1. 신청서류

2. 사업신청서
 - 2-1. 지역전략전시회 신청가능 산업(예시)
3.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계산법
4. 전회 전시회 데이터 확인서(인증데이터 없는 글로벌브랜드 · 지역글로벌브랜드전시회)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6. 서약서
7. 선정기준
8. 세부 지원내용